퇴직연금 상품변경 신청서

본인/인감 확인	담당	팀장

◈ 공통사항

한국투자증권㈜ 귀중

	_								
제	도	구	분	□ DB형	□ DC형	RP(기업형	d)	☐ IRP	P(개인형)
계 좌	번호(생 년 월	월일)			회	사	0묘	
고	2	"	명			연	락	처	

◈ 운용지시/투자비율 변경 내용

※ 원금보존 추구에 "예" 체크 시 저위험 이하의 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사 표 명			※ 현금모은 우구에 유 상품 변경 ¹⁾]만기예약매매 □매매취소	투자상품 변 [:]	사전설정 경 ²⁾	원금	불초청
상 품 명	구분	매매 방법	비율/수량/금액	기본투자 비율 ³⁾ (필수)	부정기 투자비율 ((선택)	보존 추구	권유금지 상품
	□매도 □매수	□비율 □수량 □금액		%	%	□예 □아니오	□ 가입희망
	□매도 □매수	□비율 □수량 □금액		%	%	□예 □아니오	
	□매도 □매수	□비율 □수량 □금액		%	%	□예 □아니오	
	□매도	□비율 □수량 □금액		%	%	□예 □아니오	
	□매도	□ 비율 □ 수량 □ 금액		%	%	□예 □아니오	
	□매도 □매수	□비율 □수량 □금액		%	%	□예 □아니오	
	□매도 □매수	□비율 □수량 □금액		%	%	□예 □아니오	

¹⁾ 보유상품 변경은 기 투자된 상품 및 보유현금(적립금)에 대한 매도/매수 요청입니다. 상품매도 시 투자상품별로 환매수수료가 발생되거나, 만기일 도래 이전 상품인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 투자상품 사전설정(배분비율) 변경은 추후 입금될 부담금에 대한 상품 매수 요청입니다. 상품별 투자 비율은 5 ~ 100% 신청 가능(투자비율 총합은 각각 100%)
- 3) 기본투자비율(필수)은 입금 시 상품매수를 위해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투자비율입니다.
- 4) 부정기투자비율(선택)은 DC/기업형IRP의 경영평가성과금, 제도전환부담금과 개인형IRP의 이연퇴직소득금액, 연금계좌이체, ISA만기전환금과 같이 수시 입금되는 목돈을 기본투자비율과 다르게 투자하고 싶은 경우 설정하는 고객님의 선택에 따른 투자비율입니다. 부정기투자비율 미설정 시모든 입금 금액은 기본투자비율로 투자되며 DB형의 경우 기본투자비율만 설정 가능합니다.

◈ 고객거래확인정보

1. 금융상품거래 및 퇴직연금 가입 확인사항

- 원리금보장상품 가입 시 확인사항
 - 퇴직연금 RP 대상 증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BBB 등급 이상으로 운영(대상증권의 만기 또는 기타사유로 발생하는 종목교체 포함) 되는 것에 대해 설명 들었으며 □ 동의 □ 거부 합니다.
 - RP/정기예금/발행어음/GIC 상품은 만기일 이전까지 상품변경 운용지시(예약)가 없는 경우 동일한 상품으로 재매수 되며, 적용이율은 재매수일자의 고시금리로 적용됩니다.
 - RP/정기예금/발행어음/GIC 상품은 만기일 이전 중도 해지 시 약정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또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서비스 확인 사항
 - 상품만기내역, 운용지시내역안내 등이 SMS 및 E-mail로 발송 되며, 지급지시완료, 약식운용현황보고서, 위험자산투자 한도 초과안내를 제외한 알림서비스에 대해 수신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공통 확인사항

- 본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로 귀사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본인의 계좌관리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하는 귀사와의 모든 거래에도 적용 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귀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의거 한국투자금융그룹내 계열회사에 내부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정보취급방침을 교부받고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개설한 상품의 약관 및 서비스 신청에 대한 약관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신청 항목별 유의사항 등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한다)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인은 불초청권유금지 상품 방문판매 등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 불초청권유금지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등 요청은 귀사의 안내 또는 요청없이 본인이 먼저 요청 한 것입니다.
- 위 상품은 불초청권유금지 상품으로 회사가 방문판매등으로 먼저 권유를 할 수 없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방문판매등을 요청해야 권유가 가능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본인은 고객거래확인정보(공통확인사항 및 상품별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들었으며,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조 및 거래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객 명 _____

_(인/서명)

(인/서명)

저축은행 상품 고객 확인사항 (저축은행 상품 매수 시)

-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저축은행 예/적금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보험금 지급한도(저축은행별 원리금 합산 5천만원)와 같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 ✓ 본인은 귀사를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에 대해 타사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에서 운용 중인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을 타사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추가 운용 하거나 운용 한도를 확대할 경우 귀사에 즉시 통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당사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예금자보호 한도(저축은행별 전 퇴직연금사업자 원리금 합산 5천만원)를 감안하여,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의 경우 금융기관별 원리금 포함 5천만원 까지만 매수 가능합니다. 예/적금 만기일에 연장 또는 재예치되는 금액이 저축은행별 예금자보호 한도(원리금 포함 만기상환 예상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매도처리 될 수 있으며, 자동매도된 금액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당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를 위반할 경우 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저축은행 상품 고객 확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과 상이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	객	명	
---	---	---	--

♠ 환매수수료 확인서 (환매수수료 부과 상품 매수 시)

■ 환매수수료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상		명	가입 후	개월 이내 환매 시,	징수구분(환매금액, 이익금 등)	의	%가 환매수수료로
보과되옥 화 <u>인</u> 하니드	ŀ						

- ☞ 상품명, 개월수, 징수구분 그리고 환매수수료율 등 괄호 내 내용 자필 기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께서 투자정보(투자경험이나 투자목적 등)제공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당사 직원으로부터의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으시 면 아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고객님께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 이 확인은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아래 해당사항("□")에 체크 후 밑줄 친 곳은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투자자정보 미제공)
-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 등 거래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시려는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위험도가 고객님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

고 객 투 자 성 향			자필기재	(예시 : 위험중립형)	
해당상품명 /	위험등급	해당상품명			/ 위험등급
해당상품명 /	위험등급	해당상품명			/ 위험등급

🖙 투자자성향, 상품위험등급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 참조하여 해당 명칭 기재), 다수 상품 가입시 해당 상품명 기재

※ 투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위험도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위험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고객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원칙: 소비자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투자권유 금지 의무
 - *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성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상품이 고객님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직원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 * 적정성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판매영업점		판매직원 직위		판매직원	성명	(인/서명)	판매녹취시간	
유선/방문 접수 ⁵⁾ 시	접수시간	접수자	(인/서명)	고객연락처			법인/단체 신청 시	신청자 소속 및 성명
취소신청 시	성명		(인/서명)	취소사유				

5) 단, DC가입자 유선접수는 계좌비밀번호 등록 후 가능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성명	생년월	일	- I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자택 □직장)			1	국적 🗆디	바한민국	□기타(국가	명 기재)	영문명	재외국민/외국인만 기재	
위임내용										
본인은 상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	위임내용에 대현	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	에 대하여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확약합니다.										
				신경	청인(본	인) :			(인/서명)	

■ 대리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필수-상세)								
대리인 정보수집·이용 목적	- 본인의 거래 관계 설정 또는 유지를 위한 대리인의 신분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본인의 거래관계 설정 등에 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의 정보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 미동의	□ 동의함						
_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대리인의 성명, 영문명, 국적, 주소, 연락처, 위임인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위 <u>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 미동의	□ 동의함						

※ DC가입자계좌는 대리인 거래가 불가능합니다.